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592호

2007년 8월 3일 금요일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07- 894호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 2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07- 895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3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소3-20호선)실시계획인가고시 ... 7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647호 200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 1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648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 2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654호 무주 방치기계 공시송달 ..... 24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조 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제**

2007년 8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4호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과 동일하게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 1. 외국인
-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2장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제7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의 구성)** ①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추천한자
- 2.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관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단체 등의 포상)** 구청장은 관내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구민)**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하고, 「인천광역시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규정에 의거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2007년 8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5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와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7조의2(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 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38호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0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소로3류20호선, 사업명: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6) 및 건설과(560-452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년 8월 일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7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3류20호선)
  - 【명칭】 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L = 293m, B = 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7. 8월 ~ 2008. 2. 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불입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불입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불입과 같음

## 용 지 조 서

번호	동명	지번	지목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	공촌동	산142-2	임	232	59	부평구 부평동 400-21	김옥진				
2	공촌동	산142	임	1,450	363	부평구 부평동 400-21	김옥진				
3	공촌동	219	전	1,486	17	동구 송림동 8-500	문인환				
4	공촌동	283	전	1,243	141	서구 공촌동 250	이용민				
5	공촌동	283-1	전	2,341	239	서구 공촌동 250	이용민				
6	공촌동	산141-3	임	3,328	450	산림청	국				
7	공촌동	282	전	1,499	79	서구 공촌동 250	이철주				
8	공촌동	278	전	560	399	서구 연희동 11	정용구				
9	공촌동	278-1	전	701	318	재무부	국				
10	공촌동	산141-6	임	402	27	산림청	국				
11	공촌동	산140-4	임	472	35	인천광역시 서구	국				
12	공촌동	275-1	전	2,645	418	서구 공촌동 307-36	이용진				
13	공촌동	277-1	전	7	7	인천광역시(교육감)	국				
14	공촌동	275	답	3,833	115	서구 신현동 254 주공a 25동 203호	김영욱 외1				

## 지장물 조서

번호	동명	지번	지장물		소유자		관계인			비고
			종류	수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	공촌동	283-1	배나무	109	서구 공촌동 250	이용민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647호

**200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계획인원**

- 명예퇴직 : ○명
- 조기퇴직 : ○명

**2. 명예(조기)퇴직 신청**

**가. 신청대상**

- 명예퇴직 : 공무원연금법상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 조기퇴직 : 실제 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나.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까지**

**다. 신청절차**

- 명예·조기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별첨 「명예·조기퇴직 수당지급 신청서」, 「명예·조기퇴직원」 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3. 대상자 선정 및 추천**

가. 소속기관에서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3조규정에 의하여 매월 신청기간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되 예산범위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를 우선 추천해야 함.

#### 나. 대상자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조기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장기 위탁교육 훈련 진행중인 자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수당지급 신청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대상 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 4.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추천된 명예·조기퇴직 대상자는 당해 월 21일 이후 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조기퇴직 대상자를 월 단위로 최종결정하며 결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 5.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의 취소

명예·조기퇴직 신청기간 이후 명예(조기)퇴직일 까지의 기간중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을 취소.

#### 6. 수당지급

명예·조기퇴직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결정이후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7.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 ① 재직 중의 사유로 급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②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③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